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7. 9.(월) / 총5매 (본문 2)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김성호, 사무관 장창석, 주무관 허예원 ·☎ (044)201-3516, 3517, 3522
관련 단체	해외건설협회	중소기업 지원센터	·센터장 신동우, 과장 이지훈 ·☎ (02)3406-1066, 1083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정부, '동반진출,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' 집중 지원

- 신청접수(7.10~7.24)...8월중 우수기업 지정, 시장개척·현장훈련(OJT) 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동반진출 실적,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'우수 해외건설업자'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그간 우리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'우수 해외건설업자' 선정을 통해 수주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.
 - * 전체 수주 대비 중소기업 하청 및 동반진출 비율: '15) 5.5% → '16) 4.2% → '17) 3.3%
 - ** 전체 파견 인원 중 아국 인원 비율: '15) 12.1% → '16) 12.0% → '17上) 11.3%
-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'14년에 수주 실적 등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처음 선정했고,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.
 - 대기업 2개, 중견기업 3개, 중소기업 4개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하며, 모집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서 마감 이후 심사를 거쳐 8월중 결과가 발표된다.

- 희망 기업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(02-3406-1083)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(044-201-3522)로 문의가 가능하다.
- 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상 수여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·네트워킹, 금융,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,
 - 국토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(시장개척, 투자개발형 F/S, 무상 ODA 등)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뿐 아니라,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.
 -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, 수출입은행과 협의를 거쳐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결과가 수출금융 등 우대 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장창석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그간의 해외건설이 수주량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동반진출, 일자리 창출 등 수주의 질적 측면 소홀

- 이에 따라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지속적 하락

- ☞ 동반진출 실적,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'우수 해외건설업자'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수주의 질 향상 유도 필요

□ 세부내용

- (선정기준)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을 중점 반영하고, 재무건실도, 국산기자재 활용실적* 등도 고려

* 「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」에서 공사계약실적, 재무건실도, 신규시장개척 실적, 외화가득률 등을 고려토록 규정

- (선정절차) 선정기준 확정(선정위원회),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·추천(해외건설협회), 심의·의결(선정위원회**) 등을 거쳐 확정·발표

-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개기업을 선정하되, 대기업(2개)·중견기업(3개)·중소기업(4개)은 분리하여 심사

- (인센티브) 선정된 '우수 해외건설업체'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 발굴·금융·인력 등을 유효기간인 3년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, 선정기준 구체화 및 확정(선정위원회, 7월 초)
- 우수업자 선정 공고 및 접수, 신청 서류 확인·검토(7월 중)
-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(선정위원회, 8월초)
- 선정기업 개별통보 및 대외 공표(8월초), 시상식(11월)

1. 목적

- 동반진출 실적,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'우수 해외건설업자'로 선정·집중 지원하여 수주의 질 향상
- 우수 건설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굴, 전파

2. 신청자격

-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

3. 추진일정

- 모집공고 : 2018. 7. 10(화)
- 서류접수 : 2018. 7. 10(화) 09:00 ~ 7. 24(화) 18:00

가. 제출서류

-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신청서 1부
- 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(<http://icak.or.kr>, 시사채널→공지사항) 참조
-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(중소·중견기업만 해당) 1부
- 신청기업의 재무제표('17년말 기준) 사본 각 1부
-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
나. 접수처

-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(☎ 02-3406-1083)

* 주소 : (100-764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(서소문동, 부영빌딩 13층)
* E-mail : smcbc@icak.or.kr

다. 신청서 제출방법

-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
○ 업체평가 및 선정 : 18년 8월중 발표 예정

* 해외건설 전문가로 구성된 「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심의위원회」를 통해 확정

4.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,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- 지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